

15세기 서울 都城의 商業

徐 聖 鎬

1. 머리말
2. 서울 都城 商業의 성립
3. 15세기 서울 都城의 流通機構와 商人
4. 15세기 서울 市廛의 존재 형태와 발전
 - 1) 市廛의 명칭과 外樣
 - 2) 物種別 市廛 배치
 - 3) 市廛의 同業組織化와 買集權의 형성
5. 15세기 市廛 정책의 基調와 市廛 감독체제
 - 1) 市廛 정책의 基調
 - 2) 市廛 감독체제
6.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이래 전근대 국가의 수도에서는 왕실과 귀족 관료 등 지배층과 관부 및 도성 주민의 각종 수요를 위해 도성 내부에 유통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수도이던 서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종로 거리는 바로 조선 시대 어용 상업조직인 시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이 있던 곳으로서 그 유래가 오래임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의 종로 거리가 이처럼 시전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상업의 중심지가 된 것은 물론 조선 건국에 의해서였다. 고려시대에도 서울은 3경의 하나로 중요시되었으나, 巡住移御地라는¹⁾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성 상업으로서의 서울

의 상업은 새로 건설되어야 했다.

서울 도성 상업의 성립과 그 체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시전 건물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유통기구와 상인, 市廛 상업의 존재 형태와 발전, 국가의 감독 체제 등은 별로 검토되지 않았다. 또 조선 후기의 상황이나 사료로써 소급하여 조선초의 서울 상업이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가능한 한 前 시대인 고려시대의 개경 상업과의 역사적 연속성과 차별성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2. 서울 都城 商業의 성립

전근대에는 왕경 내부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민간의 유통 기구와는 별도로,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운영한 어용적인 유통 기구가 있었다. 신라의 경우, 5세기인 말 소지마립간 12년에 市肆를 처음 열었고²⁾ 6세기 초 지증왕 때에는 東市를 두었으며,³⁾ 7세기 말에는 통일로 인한 물자 수요의 증대와 민간 유통의 확대에 부응하여 西市와 南市를 추가로 설치하였다.⁴⁾ 또 이들 시장들은 각기 東市典과 南市典, 西市典⁵⁾ 등의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통제되었다. 고려의 경우에도 그 설치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태조 당시에 油市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⁶⁾ 늦어도 광종 때에는 기본적인 市廛의 틀이 갖추어져 있었다.⁷⁾ 또 穆宗 때에는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의 책임자인 京市署丞이 보인다.⁸⁾ 조선의 경우에도

-
- 1) 李丙燾, 1980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47쪽, 161쪽
 - 2) 『三國史記』 권3 昭知麻立干 12년 1월
'初開京師市肆 以通四方之貨'
 - 3) 『三國史記』 권4 智證王 4년 1월
'置京都東市'
 - 4) 『三國史記』 권8 孝昭王 4년
'置西南二市'
 - 5) 『三國史記』 권38 職官 上
 - 6) 『三國遺事』 권1 王曆1
'乳岩下 立油市 故今俗利市云乳下'
 - 7) 北村秀仁, 1990 「麗時代의 京市의 基礎的考察-位置·形態中心に-」 『人文研究』 42-4,
大阪市立大 288-289쪽
 - 8) 『高麗史』 권77 百官2 京市署

왕실과 관청의 수요품 조달과 재정 물자의 불하, 서울 도성민의 필수품 조달 등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다른 시기와 다르지 않았으므로 그를 위한 市廩이 설치되어야 했다.

그런데 서울의 상업이 시전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관리 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다. 서울로 천도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알듯이 태조 3년 10월의 일로서, 이 때부터 定宗 원년에 이르는 4,5년 간에 걸쳐 도성의 성곽과 종묘, 사직, 궁궐, 그리고 성균관 등 왕경으로서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건설 사업이 대략 완료되었다.⁹⁾ 그러나 그 후 개경 환도 등의 곡절을 겪었고 태종 5년에야 서울로 재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확정을 보게 되는 등 시전 상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 상업의 형성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렸다. 더구나 서울은 도시 상업이 발달한 舊都 개경에 비해서는 상업의 발달이 크게 미흡하였다. 고려초에 楊州이던 서울은 문종 때에 南京으로 승격되어 新宮을 지은 적이 있고¹⁰⁾ 문종 30년 이후 어느 시점에 楊州로 격하되었다가¹¹⁾ 숙종 때에 다시 南京으로 승격되어 궁궐이 새로 건설되기도 하였다.¹²⁾ 이처럼 서울은 고려 당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繁華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¹³⁾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도시 상업의 발달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왕경이던 개경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 상업이 발전하거나 시전과 같은 조직적인 유통기구가 크게 조성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왕경으로 확정된 서울은 市廩 등의 도시 상업을 사실상 새로 조성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오랜 왕경으로서의 전통과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던 개경의 상인들을 서울로 옮겨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음 기사는 이를 말해준다.

9) 姜晉哲, 1967 「李朝時代의 都邑의 形成과 發達」 『都市問題』 2-8, 14-18쪽

10) 『高麗史』 권56 地理 1 文宗 21년 ; 같은 책 권8 文宗 22년 12월 戊申

11) 이병도, 1980 앞의 책 151쪽

12) 『高麗史』 권12 肅宗 9년 5월 甲午

13) 『高麗史』 권71 樂2 俗樂 楊州

‘楊州即高麗漢陽府 北據華山 南臨漢水 土地平行 富庶繁華 非他州比’

- a. 『開城留後司의 市肆을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었다. 유후사에서 상언하기를, “舊都의 백성들은 工商이 섞여 살면서 그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읍을 옮긴 이후로 市肆 여는 것을 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米穀을 가지고 雜物을 무역하는 자가 전혀 없고 富商老賈가 錢穀을 많이 쌓아두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거나 몰래 매매를 행하는 까닭에 쌀값이 뛰어오르고 인구가 날로 줄어들어 閭里가 쓸쓸하니, 중국의 사신이 오고 갈 때 보기에 민망합니다. 부상대고로서 옮기려 들지 않는 자만 강제로 新都로 이사하게 하고 그 외에는 각기 市肆를 열게 하여 무역을 편하게 하십시오.”라 하니 이를 따랐다.’(『太宗實錄』 권17 9년 3월 丙午)

즉 태종 5년 서울로의 재천도 이후 舊都인 개경의 市肆 활동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舊都의 格을 떨어뜨리고¹⁴⁾ 궁극적으로는 개경에서 활동하던 시전 상인들을 서울에 옮겨와서 新都의 시전 상업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쉽게 관철되지 못하였다. 개경에서의 市肆 금지는 暗行買賣 등으로 米價 앙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아 사실상 백지화되었던 것이다. 또 개경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로의 천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定宗 때 개경 환도가 결정되자 그간 서울로 옮겨와 있던 개경의 주민들이 서로 기뻐하며 개경으로 돌아가려는 행렬이 길을 매웠다는 것이¹⁵⁾ 이를 말해준다. 개경 주민들의 태도가 이리하고 개경 市肆 금지에 따른 米價 앙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자, 위에서 보았듯이 富商大賈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경 거주 상인들은 이전대로 개경에서의 市肆 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허용되었고, 이듬해인 태종 10년 10월에는 개경 상인들이 서울 상인들과 함께 商稅 부과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¹⁶⁾

서울로의 재천도 후에도 과거 어용 상업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던 개경 상인들이 서울로 쉽게 옮겨오지 않았던 것은 새 도읍 서울의 도시 상업 조성에 적지

14) 姜萬吉, 1972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99쪽

15) 『定宗實錄』 권1 元年 2월 丁卯

『遂定議 還于松京 初都人皆懷舊都 聞欲還都 相與喜悅 提携負戴 絡繹于路 使守城門 以止之』

16) 『太宗實錄』 권20 10년 10월 甲子

『征工商有國常典 令京中工商 每月一名納糶貨一張于漢城府留後司』

않은 어려움을 주었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도 주로 雲從街에 밀집하여 상거래가 상당히 문란한 상태였고,¹⁷⁾ 이는 한편으로 서울 상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왕경 상업의 오랜 전통을 가진 舊都 개경의 시전 제도에 의거한 서울 상업의 정비 원칙을 세우고,¹⁸⁾ 곧바로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안을 만들었다.¹⁹⁾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거니와, 그 1년 뒤인 태종 11년 1월에는 ‘시루’, 즉 市廛 상인 거래 시설의 조성 방침이 세워지게 된다.²⁰⁾ 이러한 거래 시설은 서울 내 街路 좌우에 세워질 행랑 중 상업용으로 이용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부의 시전 행랑 건설은 상설적인 점포를 설치하여 상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어용적 상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²¹⁾

조선초 서울 도성 내의 행랑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태종 12년 2월부터 서울의 街路 좌우 양쪽에 시전 행랑을 비롯한 대규모의 행랑이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행랑 조성 役事는 2년 5개월 만인 태종 14년 7월에 일단 마무리되거니와, 그 행랑 중의 상당수가 시전 행랑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서울 도성 내 행랑 건설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b-1. ‘비로소 市廛의 좌우 행랑 8백여 間的 터를 닦았는데, 혜정교에서 창덕궁 洞口に 이르렀다. 外方의 游手 僧徒를 모아서 양식을 주어 부리고 인하여 開川都監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다.’(『太宗實錄』 권23 12년 2

17) 『世宗實錄』 권46 11년 12월 乙亥

18) 『太宗實錄』 권19 10년 1월 乙未

‘司憲府上書陳時務八事…一 工不居肆 業不能專 故舊京之時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鞍 分店大市 至市牛馬 亦有常所 其他米穀之類 則各於所居 自遷都以來 雜處雲鐘之街 男女無別 商賈混淆 窺覷幾隙 務相攘竊 願令京市署 一依舊京之制…從之’

19)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甲辰

‘定市廛 大市長通坊以上 米穀雜物 東部則蓮花洞口 南部則薰陶坊 西部惠政橋 北部安國坊 中部廣通橋 牛馬則長通坊下川邊 間巷小市 各於所居門前’

20) 『太宗實錄』 권21 11년 1월 甲子

‘(左政丞 成)石璣曰 新都道廣 宜於兩傍 聽民作市樓…上皆許之’

21) 劉敎聖, 1959 「李朝時代 서울의 商業概觀」 『향토서울』 6, 40쪽

월 乙丑)

2. '開川 역사가 끝났다. …개천도감을 그대로 行廊造成都監으로 삼아 이 날로 역사를 시작하였다.'(『太宗實錄』 권23 12년 2월 庚午)
3. '都城의 좌우 행랑이 이루어졌는데 궐문에서 貞善坊 동구까지 행랑이 4백 72間이었다.'(『太宗實錄』 권23 12년 5월 乙巳)
4. '다시 행랑의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경복궁 남쪽에서 종로 앞까지 좌우 행랑이 무릇 8백81間이었다.'(『太宗實錄』 권25 13년 2월 乙卯)
5. '長行廊이 다 이루어지니 鐘樓로부터 서북쪽으로는 경복궁까지 동북쪽으로는 창덕궁과 종묘 앞 樓門까지이며, 남쪽으로는 승례문에 이르니, 前後에 이루어진 바 좌우 행랑이 모두 1천3백60間이었다.'(『太宗實錄』 권25 13년 5월 甲午)
6. '도성의 좌우 행랑을 짓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루에서 남대문까지, 종묘 앞 樓門에서 동대문까지 좌우에 행랑을 세우려 한다.”(『太宗實錄』 권 28 14년 7월 壬辰)

태종 12년 2월에 정부는 혜정교(지금의 광화문 우체국 동쪽의 다리)²²⁾로부터 창덕궁 동구에 이르는 도로의 좌우에 행랑 8백여간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 주변 하천의 준설을 맡은 개천도감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관장하게 하였으며(b-1), 개천도감은 닷새 만에 준설을 끝내고 행랑조성도감으로 개칭, 본격적으로 행랑조성의 역을 맡아보기 시작하였다(b-2). 그런데 그 연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본래의 건설 목표 구간은 일단 공사가 중단된 듯하며, 3개월 만에 완공된 것은 창덕궁 궐문에서 정선방동구(지금의 종로 3가 네거리)까지 도로 좌우의 행랑 472간이었다(b-3). 공사가 보류되었던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까지 구간의 공사는 이듬해에 시작되었다. 태종 13년 2월에 경복궁 남쪽에서 종묘앞 구간의 881간의 행랑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b-4) 바로 그것이다. 이 공사는 3개월만인 태종 13년 5월에 완성되었으니, 종루에서 서북쪽으로는 경복궁까지, 동북쪽으로는 창덕궁 및 종묘 앞 樓門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승례문까지의 구간을 모두 합하여 1,360간의 행랑이 준공되었던 것이다(b-5). 즉 1,360간이라 한 것은 472간과 881간을 합한 1,353간을 가리킨 것이라 하겠다.²³⁾ 한편 이듬해인 태

22) 한글학회, 1991 『한국땅이름 큰사전(하)』 6,039쪽 혜정교

23) 종래의 연구에서는 혜정교에서 창덕궁동구에 이르는 881間の 행랑을 중복 算入하여 왔다.

종 14년 7월에는 종루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그리고 종묘 앞 樓門으로부터 동대문 좌우까지 행랑을 건설하라는 왕명이 내려지고 있다(b-6). 종루에서 남대문까지의 구간은 앞서 조성이 완공되었음에도 다시 행랑 조성 명령이 내려진 까닭은 불명하다. 추측컨대 이 구간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았거나 혹은 이전의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곳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종묘 앞 樓門에서 동대문 좌우까지의 구간은 그간의 행랑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구간이다. 이 명령대로 행랑 건설이 추진되었는지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成宗 3년 戶曹에서 이 구간의 일부인 日影臺-蓮池洞石橋 구간, 즉 현재의 종묘앞 종로 4가에서 종로 4가와 5가 중간 지점까지의 구간에²⁴⁾ 새로 시전을 설치하자는 건의를 올릴 때, 행랑 건설 자체를 새로 하자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점,²⁵⁾ 그리고 특히 위 왕명이 있는 지 두달 뒤인 태종 14년 9월에 행랑 건설로 인해 철거된 가옥들에 대한 보상액이 결산되고 있는 사실²⁶⁾ 등으로 볼 때 왕명에 따라 행랑 조성 역사가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서울 도성 내의 행랑 조성은 이미 태종 재위 기간 중에 1,360칸을 훨씬 넘는 규모로 조성된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행랑들이 모두 시전 행랑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태종 대에 조성된 행랑 중에서 창덕궁 궐문에서 정선방 동구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것들은 관청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²⁷⁾ 이 밖에 큰 街路邊에 설치되어 왕경으로서의 外觀을 보기 좋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밖의 다른 용도들로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⁸⁾ 이 점은 조선초 당시의 기록에 시전 구역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위에

24) 日影臺는 종묘 남쪽 街路의 북쪽 路傍에 위치하고 (李重華, 1929 『京城 市廛의 變遷』 『別乾坤』 23, 73쪽), 蓮池洞 石橋는 연지동교, 혹은 두다리로 불리는 것으로 현재의 종로 4가와 5가 사이에 위치한다(한글학회, 1991 앞의 책 (上) 1,539쪽 두다리).

25) '戶曹啓 今承傳敎 人言都市 地狹人衆 奸細之徒 欺誕攘奪 無所不至 車馬填塞 人多見傷 自蓮池洞口 至敦義門石橋 分列市肆 令疎密得宜 則奸濫可除 臣等以爲 自三間屏門 至敦義門石橋 地勢窄狹 昌德宮宗廟 義禁府前路 不宜聚人紛擾 請自日影臺 至蓮池洞石橋 分左右坐市 從之'(『成宗實錄』 권18 3년 5월 丁未)

26) 『太宗實錄』 권28 14년 9월 庚辰

27) 『太宗實錄』 권23 12년 5월 乙巳

『議政府請 昌德宮門外行廊 分給各司 爲朝房…從之』

28) 고려시대 開京의 경우, 시전 거리가 아닌 廣化門에서 奉先庫까지의 거리에도 행랑이 준비하였는데, 이는 중국 사신 등의 숙소로 향하는 가로변의 美觀을 위한 목적이었다(徐聖鎬, 1994 『韓國中世의

건설된 행랑들의 일부인 점에서 확인된다. 世宗 11년 일본에 通信使로 다녀온 朴瑞生은 귀국 후 일본 市街의 경우처럼 매 점포마다 板子로 만든 層樓를 설치하고 그 위에 상품을 비치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는데,²⁹⁾ 이 때 언급한 시전 구간은 雲從街-樓門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인 것이다. 이는 태종 대에 완공된 행랑 구간 중 樓門-동대문 구간과 관청 업무용으로 사용된 樓門-창덕궁 구간을 제외한 구간이다. 따라서 조선초의 시전 행랑 구간은 雲從街-樓門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 즉 오늘날의 종로 1가-종묘 앞 구간과, 종각-廣橋 구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성종 3년에 와서 日影臺-蓮池洞石橋 구간이 새로 시전 구역으로 되었던 것이다.³⁰⁾

3. 15세기 서울 都城의 流通機構와 商人

조선초 서울 都城의 유통 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아래의 기사가 참고된다.

- c. '시전을 정하였다. 大市는 長通坊 윗쪽으로 하고 米穀雜物의 경우 東部는 蓮花洞口, 南部는 薰陶坊, 西部는 惠政橋, 北部는 安國坊, 中部는 廣通橋로 하며, 牛馬의 경우 장통방 아래 川邊으로 하였다. 閭巷小市는 각기 사는 곳의 門前에서 열도록 하였다.'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甲辰)

기사 c의 내용은 시전 행랑이 건설되기 전인 태종 10년에 서울 도성 내 시장의 혼잡성과 상업 거래의 무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작성된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안이다. 여기에서 서울의 상업은 '여항소시'를 제외하고는 일단 '市廛'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전은 후에 행랑이 건설되면 '여항소시'와 달리 대부분 행랑에 입주하여 영업

都市와 社會」『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8-206쪽). 조선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 미관용의 행랑이 있었을 것이다.

29) 『太宗實錄』 권46 11년 12월 乙亥

‘通信使 朴瑞生 具可行事件以啓…日本街市之制 市人各於簷下 用板設層樓 置物其上 非惟塵不及汚人得易觀而買之 市中食物 無貴賤 皆買食之 我國之市 則乾濕魚肉等食物 皆置塵土 或坐或踐 乞自雲從街左右行廊 東至樓門 自鐘樓 南至廣通橋 皆構補簷 其下設層樓置物之處 分某間爲某所 以次懸額 令其易知’

30) 이중화, 1929 앞의 논문 71쪽

을 하게 되지만, 행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牛馬를 거래하는 시전과 같은 경우는 그 거래 물종의 특성상 행량과 같은 제한적인 시설 물보다는 개방된 야외에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고려 때 개경 城內의 馬市가 川邊에 열리고 있었던 사실이나,³¹⁾ 바로 위 배치안에서 보듯이 태종 10년 당시의 계획안에서 牛馬類 市塵의 지역이 長通坊 아래 川邊으로 계획되고 있는 데서 짐작된다.

시전 상업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료에 따르면 시전 중에서도 '대시'라 불리는 것은 長通坊以上에, 米穀雜物을 거래하는 시전은 東部の 경우 蓮花洞口, 南部는 薰陶坊, 西部는 惠政橋, 北部는 安國坊, 中部는 廣通橋 등에 계획되고 있고, 牛馬류 시전은 長通坊 아래의 川邊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市塵 상업 내부적으로 '대시'라 불리는 곳과 '미곡잡물'류 시전, 및 '우마'류 시전 등이 서로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미곡잡물'류 시전으로 계획된 곳들 중 남부의 훈도방과 중부의 광통교는 '대시'지역으로 계획된 '長通坊以上', 즉 장통방의 북쪽과는 관계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³²⁾ 즉 시전 상업 내부에서도 '우마'류 시전은 물론이고 '미곡잡물'류 시전과 '대시'가 또한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미곡잡물'의 '잡물'은 미곡이나 우마류를 제외한 것으로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다양한 물품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語義로도 그러하지만 앞의 기사 a에서 서울로 재천도한 이래로 개경의 市肆를 금지하자 개경에서 '米穀으로써 雜物을 교역하는 자가 없어져', 米價의 앙등이 초래되었다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잡물'이란 미곡을 매개로 교역되는 각종 물품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곡과 '잡물' 즉 각종 물품을 거래하는 시전과 구별되는 '대시'란 어떤 것일까? 語義상으로 볼 때, 시전 상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 거래 물종 등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알

31) 『牧隱詩藁』 권29 詩 同閤判書權判書 拜掃外舅姑墳墓 入城欲觀石戰 馬市川邊則空無人

32) 지역 확인은 Royal Asiatic Society에서 1902년에 발행한 『Korea』 Vol II pr2에 수록된 서울지도에 의거하였다.

수 없다. 그러나 왕실이나 관부 및 지배층의 수요품이 중심으로 거래되었던 곳으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d '사헌부에서 上書하여 時務 8事를 아뢰었다. ... 工匠은 가게〔肆〕에 거하지 않으면 業이 專一 할 수 없는 고로 舊京의 시절에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으로 大市의 점포를 나누었습니다. 牛馬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곡 종류는 각기 사는 곳에서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천도 이래로 운중가에 雜處하여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장사아치들이 뒤섞이어 틈을 엿보아 서로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京市署로 하여금 한결같이 舊京의 제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太宗實錄』 권19 10년 1월 乙未)

이는 앞서 태종 10년 2월의 시전 지역 배치안(사료 c)이 나오기 한달 전에 이 배치안을 나오게 한 사헌부의 건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舊京, 즉 개경에서는 태종 10년 현재의 서울 상업과 달리, 시전들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 물종별로 시전 지역이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이 大市를 分店하였으며, 牛馬류 시전도 각기 정해진 장소가 있었고, 다만 米穀류는 규정된 지역이 특별히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우마류 시전이나 미곡류, 잡물류 등과 달리 '대시'는 왕실이나 관청의 수요품, 관리를 비롯한 지배층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주로 거래하는 시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대시'라는 호칭은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왕실이나 관청, 지배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장 기능에 착안하여 붙여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³³⁾

'대시'가 이처럼 시전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었음은 세종 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 11년 당시에 행랑이 조성되어 있던 시전 구간은 雲從街-樓門의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 즉 오늘날의 종로 1가-종묘 앞 구간과, 종각-廣橋 구간이었다. 그런데도 이보다 조금 후에 편찬된 『세

33) 고려 시기 개경의 '대시'는 市廛 또는 京市와 同義語로서, 京市=市廛의 대규모성과 中樞性을 강조한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北村秀仁, 1990 앞의 논문 277쪽, 283쪽). 그런데 기사 d에서 보듯이 개경 시전은 '대시'와 우마류 시전과 미곡류 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 시기 개경의 '대시'도 단지 시전 또는 경시 그 자체의 의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대시’가 中部의 長通坊과 慶幸坊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⁴⁾ 이는 전술한 시전 행랑 구간 중에서 적어도 鐘樓-廣通橋 구간이 명백히 제외된 것이다. 장통방과 경행방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대시’가 雲從街-樓門의 구간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전 행랑 구간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대시’가 시전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었음은 태종 대에 행랑이 건설된 시전 지역 중 이처럼 제한된 구역만을 ‘대시’라 한 데서도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시’의 취급 물종 자체가 ‘잡물’을 취급하는 여타 시전의 경우와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아니겠다. ‘잡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물종이라 하더라도 여타 시전들에 비해 질적으로 고급의 물품을 주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시’의 구체적인 실체를 추적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타 시전과 구별되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며, 이는 신분제 사회의 도시 상업이 갖는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편 서울 都城 상업이 시전 상업으로만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시전에 속하지 않은 非市廛系 유통기구들도 있었다. 이러한 유통기구로서 기록에 전하는 것은 앞의 기사 c에 보이는 ‘間巷小市’이다. 이 ‘여항소시’는 그 이름으로 보더라도 영세 규모의 유통기구임을 알 수 있거니와, 市廛이나 行商 등 여타의 상인들과 달리 정부의 商稅 수취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³⁵⁾ ‘여항소시’는 당초 국가에서 서울 상업의 지역 배치를 계획할 때 특별한 장소로 제한되지 않고 각기 자신의 거주지[所居門前]에서 자유로이 개설하도록 허용되었다(기사 c). 서울 도성민들의 일상 생활상의 편리를 고려하고, 또 영업 규모가 영세한 만큼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여항소시’의 전문 물종은 대개 도성 주민들의 가장 일상적인 수요 물품, 예컨대 蔬菜류 같은 것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非시전 계열의 유통기구가 모두 이러한 ‘여항소시’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기록에는 뚜렷이 전하지 않으나, ‘여항소시’에 비해서는 그 영업 규모가

34)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都漢城府
‘大市在中部長通慶幸坊中央’

35) 『太宗實錄』 권29 15년 4월 己巳

크고 점포도 갖춘 유통기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앞에서 시전 행랑의 건설 구간을 살펴 본 바 있거니와, 큰 도로 좌우에 건설된 이들 시전 행랑만이 이 지역 상업 시설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전 행랑은 모두 큰 도로변에 위치하였지만, 그 행랑의 이면에도 적지 않은 상인들의 점포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앞선 고려의 시전 거리의 모습이 참고된다. 아래의 기록들을 보자.

- e-1. ‘京市署에 불이 나 1백20戶가 延燒되었다.’ (『高麗史』 권53 五行1 五行二曰火 文宗 5년 2월 癸巳)
- 2. ‘祭器都監과 藥店 두 관사의 樓門과 市巷의 民家 6백40戶에 불이 났다.’ (위와 같음, 宣宗 9년 3월 丙辰)
- 3. ‘市廛에 불이 나 民戶 수십家가 延燒되었다.’ (위와 같음, 仁宗 22년 12월 丙寅)

기사 e-1의 京市署는 개성 南大門 십자로의 북쪽 大路, 즉 南大街의 市廛 밀집 구역 끝 부분에 위치하였다.³⁶⁾ 그런데 이 곳에 불이 나서 延燒하였다는 120戶는 분명히 시전 행랑은 아니며,³⁷⁾ 그렇다고 이것들이 모두 순수한 民家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이들 120호는 ‘市巷民家’(e-2)들로서, 시전에 불이 날 경우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e-3) 건물들인바, 그 모두가 상업과 관계없는 순수한 민가라거나 시전 상인들의 주거지였다고만 볼 수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시전 거리는 곧 개경 상업의 중심지였던 만큼, 이들 시전에 인접하여 밀집해 있는 많은 건물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역시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점포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非시전 계열의 상인들 역시 시전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혹은 특별한 관계 없이, 자신들의 점포를 당시 상업 중심지인 시전 거리의 시전 행랑 가까이에 두고 상업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비단 고려 시기 개경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정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조선의 서울에서도 시전 행랑이 조성된 뒤에 점차 非 시전 계열 상인들이 시전 행랑 가까

36) 北村秀仁, 1990 앞의 논문 280-282쪽

37) 행랑의 규모는 주지하듯이 間을 단위로 한다. 『高麗史』 五行志에서도 시전 건물에 화재가 난 경우 그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를 間을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자신들의 점포를 두고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다. 오히려 유통 경제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조선초의 서울에서 이러한 非 시전계 점포의 비중은 고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 대 이래로 行商과 함께 商稅 징수 대상으로 규정된 ‘坐賈’는 시전 상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 비시전계 점포의 상인들까지 포함한 범주였다고 생각된다.

서울의 상인들은 그 종사하는 유통 기구의 종류에 따라 시전 상인들과 非 시전 상인들로 크게 구분되었다.

시전 상인의 경우, 行商과 달리 일정한 장소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으며, 牛馬류 시전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가 조성한 행랑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다.³⁸⁾ 이들은 미곡이나 우마류, 기타 각종 蔬菜류와 같이 수공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생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과, 수공업적 노동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구분된다. 前者는 말할 것도 없이 商業에만 종사하는 상인들이지만, 後者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시기 이래의 기록에서 工匠들이 시전 상업의 주체로 언급된 사례들이 있어 주목된다.

- f-1. ‘韓康이 이어 조목별로 아뢰기를, …工商은 利用厚生하는 所以인데, 지금 諸司에서 쓸 것을 모두 市에서 취하되, 혹은 그 값을 낮추기도 하고 혹은 끝내 그 값을 지급하지 않아서 工商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니,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이를 급하게 하십시오.’(『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22년 2월)
2. ‘사헌부에서 上書하여 時務 8事を 아뢰었다. …工匠은 가게〔肆〕에 거하지 않으면 業이 專一 할 수 없는 고로 舊京의 시절에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으로 大市의 점포를 나누었습니다.’(『太宗實錄』 권19 10년 1월 乙未)
3. ‘宗簿直長 崔萬里등이 말하기를, “지금의 工商은 里巷에 두루 흩어져 서로 이익을 힘써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행랑을 세워 市塵을 삼았으니, 이제부터 某匠·某工으로 나누어 같은 무리끼리 거하게 하고, 京市署로 하여금 그 물가를 고르게 하도록 하며, 위반자는 통렬히 징벌하십시오”라 하였다. 의정부와 六曹에서 의론하

38) 『世宗實錄』 권7 2년 閏正月 戊戌
‘國家旣建行廊 以爲市塵’

기를, “행랑과 諸色 工商의 門에 中國의 例에 따라 立標하도록 하십시오
오”라 하였다.’ (『世宗實錄』 권7 2년 閏正月 戊戌)

f-1은 고려 후기의 사정을 전하는 것인데, 각 관청이 市廛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으면서 물건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관청의 처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전 상인들을 ‘工商’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f-2는 늦어도 고려말의 개경 시전의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을 각각 판매하는 시전의 경영 주체를 ‘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은 모두 미곡이나 우마류와 달리 수공업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물품들이다. 고려 시기의 시전 중에서 그 판매 물종이 수공업 제품인 경우, 해당 시전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工匠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工匠이면서 상인이기도 한 시전 상인의 형태는 조선의 서울 상업에서도 확인된다. 위 사료 f-3에서 보듯이 세종 때 최만리는 시전의 지역 배치를 工匠들의 업종별로 하자고 건의하고 있는데[分某匠某工而類居之], 이 때 이들 공장은 시전 상인에 다름아니다. 또 성종 3년의 한 기록에는 시전의 여러 工匠들이 갖가지 사치스런 玩具를 만들어 판매함을 비판하고 있으며,³⁹⁾ 연산군 때에 司饗院의 관원은, 나라에서 시전을 세워 여러 工匠들로 하여금 각기 그 業을 팔도록 하였는데 이들 工匠이 가격을 속이는 등 ‘愚民’을 울리고 있다고 하였다.⁴⁰⁾ 이처럼 工匠으로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이를 판매하는 형태는 당시에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전 상인들의 일반적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⁴¹⁾

시전 상인은 이와 같이 상업에의 전업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 형태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경영의 규모에서도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당시 기록에는 ‘富商大賈’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은 譯官 및 권세가와 결탁하여 대외무역에 참여하거나 철을 비롯한 각종 공물의 대납 활동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⁴²⁾ 그

39)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己未

40) 『燕山君日記』 권49 9년 3월 庚戌

41) 종래에는 이러한 사료들에 나타난 경영 형태에 대해, 상인과 工匠이 하나의 시전을 동업하는 형태로 이해하였다(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고대중세)』 132쪽).

런가 하면 권세가나 사헌부 禁亂吏들과 밀착하여 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謀利하기도 하였다.⁴³⁾ 당시 기록에 보이는 富商大賈類가 모두 시전 상인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전 상인이 서울 상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들이었던 만큼 시전 상인들 중에 이러한 부상대고들이 많이 있었을 것은 무리없이 인정된다. 실제로 농업을 일삼지 않고 ‘坐肆’하여 ‘巨萬’에 이르는 재산을 모은다는 ‘市井無賴之輩’들의 참월한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데,⁴⁴⁾ 당시 서울에서 점포를 가진 채(坐肆)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상인들이란 그 대부분이 시전 상인에 다름 아닐 것이다. 또 서울 재천도 이후 서울의 시전 상업 조성을 위하여 개경의 상인들을 강제로 서울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특히 富商大賈들이 중점적인 이전의 대상이 되었음을 앞에서 보았다(사료 a). 이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시전 상인들이 대규모 경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⁵⁾

시전 상인들이 모두 이러한 부상대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행랑 조성이 끝난 뒤인 태종 15년에는 상인들에 대한 收稅率이 상인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정해지고 있는데, ‘取利多少’에 따라 ‘工匠商賈人’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商稅額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는 당시 시전 상인들 내부에서도 경영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는 非 시전 계열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항소시’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시전 행랑에 가까이에서 점포를

42) 吳星, 1990 『朝鮮初期 商人的 活動에 대한 一考察』, 『國史館論叢』 12

43) 『成宗實錄』 권180 16년 6월 乙未, 乙巳; 같은 책 권181 16년 7월 甲寅, 壬子. 심지어 상인들은 禁亂을 맡은 吏屬들과 형제의 契를 맺는 일도 있어서 정부는 이에 대해 全家徙邊의 刑을 적용하기도 하였다(『燕山君日記』 권48 9년 2월 乙巳).

44) 『世祖實錄』 권35 11년 3월 癸酉
‘前行上護軍金新民上言曰…今也 市井無賴之徒 游俠不良之輩 不事農業 坐肆謀生 專以乘時射利 財累巨萬…廢朝臣若等夷視平民如犬羊’

45) 당시의 부유한 상인들은 대부분 시전 상인들이고 시전 상인이 아닌 富商들은 ‘富商大賈’로 불렸다고 보기도 한다(홍희유, 1989 앞의 책 147쪽).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부상대고’에는 개경 시전 상인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6) 『太宗實錄』 권29 15년 4월 己巳
‘戶曹上收稅法 曹與二品以上同議以啓 工匠商賈人之稅 因取利多少 爲三等 上等每月納楮貨三張 中等二張 下等一張’

가진 채 시전과 연계 하에 혹은 그와 무관하게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그들이 다. '여항소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업적인 상인이라기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았다고 생각되며, 행랑과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노천에서 영업하였을 것이다. 경영 규모 면에서 볼 때는 商稅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영세한 자들이었다.

이와 달리 시전 행랑 근처에 점포를 가진 채 상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경우는 영세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市街에서 점포를 가졌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⁴⁷⁾ '여항소시'와 달리 정부에 의해 商稅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坐賈'는 시전 상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 비시전계 점포의 상인들까지 포함한 범주였다고 생각된다. 이들 중에도 판매 물종에 따라 수공업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이의 판매도 겸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은 서울 상업의 초창기에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경영 규모는 '부상대고'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의 상업이 시전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해가는 15세기 후반에는 이들 중에서도 그 경영을 확대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 무렵에는 후술하듯이 시전 상인들이 동업조직으로 결속을 보이고 상거래 상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확보해 가는데, 이러한 양상은 非 시전 계열의 상인, 특히 이들 점포 상인들의 점진적인 성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4. 15세기 서울 市廛의 존재 형태와 발전

1) 市廛의 명칭과 外樣

서울 상업의 중심인 시전의 존재 형태는 아직 非시전 계 상인들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속에서 당시 상업 발전의 수준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 동안 전근대 도시 상업과 관련하여 市廛의 명칭이 주목되어 온 것도 바로 그러한 상업사적 관점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조선초 시전의 명칭으로서 보이는 것은 端宗 때의 '紙肆',⁴⁸⁾ 成宗 때의 '鐵

47) 徐聖鎬, 1992 「高麗 武臣執權期 商工業의 전개」, 『國史館論叢』 37, 97쪽

物前⁴⁸⁾과 絲紬前⁴⁹⁾ 등이 있다. 이것들은 그 이름에서 명백하듯이 각기 종이와 鐵物, 明紬들을 전문 판매하는 시전이었다. 물론 이것들은 기록에 남은 경우이므로, 이 밖에 많은 물품들이 그 종류별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전에서 판매되고, 또 그 시전의 이름이 물품명을 기준으로 불려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판매 물종에 따라 시전 명칭이 붙여지는 ‘일물일전’ 형태로의 시전 구조 일대 개편이 태조 3년 1월에 이루어졌고 이는 동업조직의 등장으로서 고려와 조선을 구별짓는 도시 상업의 발전 징표의 하나로 파악되었다.⁵⁰⁾ 이 문제는 시전 상업 내지 도시 상업의 발달 단계에 관련한 것이므로 여기서 그 사료들을 살펴 본다.

- g-1. ‘京市署에서 各市의 이름을 판자에 쓰고 그 아래에 판매하는 물품을 아울러 그려서 各所에 걸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를 청하였다.’(『太祖實錄』 권5 3년 1월 戊午)
2. ‘사헌부에서 上書하여 時務 8事を 아뢰었다. … 工匠은 가게〔肆〕에 거하지 않으면 業이 專一 할 수 없는 고로 舊京의 시절에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으로 大市의 점포를 나누었습니다. 牛馬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곡 종류는 각기 사는 곳에서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천도 이래로 운송가에 雜處하여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장사아치들이 뒤섞이어 틈을 엿보아 서로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京市署로 하여금 한결같이 舊京의 제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太宗實錄』 권19 10년 1월 乙未)

g-1의 건의가 ‘일물일전’ 형태로의 시전 구조의 개편을 건의한 것이고, g-2에 나타난 ‘舊京之時’의 ‘일물일전적’ 형태도 고려시기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이 건국된 뒤인 태조 3년 1월의 건의(g-1)에 의해 개경 시전의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48) 『端宗實錄』 권12 2년 10월 丙申

‘世祖遺檢詳李克堪啓曰 去月臣過市肆 見一刑曹皂隸 持楮幣十餘張 入紙肆仰買’

49) 『成宗實錄』 권181 16년 7월 乙丑

‘(李)德良等啓曰 鐵物前 絲紬前人 最惡移市 當先鞠兩前出市人’

50) 金東哲, 1985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25-28쪽

뒤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간의 이해였다.⁵¹⁾ 그러나 g-1의 건의가 있는 태조 3년 1월은 개경 시전의 구조적인 개편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 때는 주지하듯이 천도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므로⁵²⁾ 개경의 시전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을 시도할 상황이 아니었다. 기사 g-1은 그 내용 자체에서 볼 때 각 시전의 판매 물종의 표시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시전 구조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전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京市署로서, 각 시전마다 판매 물종을 현판에 그려 이를 내걸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시전별로 전문화되어 판매되고 있던 물종이 서로 섞이는 일이 없도록(俾不相雜) 하자는 것이었다. 즉 판매 물종의 외부 표시를 통하여 상거래 질서의 亂雜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⁵³⁾

게다가 실제로 시전의 명칭이 판매 물종에 따라 정해지는 이른바 ‘일물일전’의 형태는, 전술한 조선 端宗 때의 ‘紙肆’가 최초의 것은 아니었다. 시전의 판매 물종별 전문화는 이미 고려시기부터 확인된다. 고려 태조는 920년에 油市를 세웠던 것으로 전해지며,⁵⁴⁾ 元宗 때에는 楮市橋 주변의 民家 3백여戶가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있다.⁵⁵⁾ 油市는 곧 기름 종류를 판매하는 시전에 다름아니며, 楮市橋는 그 인근에 종이나 白楮(白皮)를 취급하는 楮市가 있음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말(馬)을 판매하는 시전의 공식 명칭은 馬市였다.⁵⁶⁾ 이

51) 위와 같다.

52) 조선 건국 후 천도 후보지는 漢陽과 계룡산, 무악을 중심으로 여러 곳이 거론되었다. 태조 2년 2월에는 계룡산 천도에 대한 왕의 결심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에 따른 役事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계룡산의 役事는 12월에 와서 河崙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이듬해 9월 한양 천도가 결정되기까지 천도 문제는 적지 않은 골절을 겪었다. 당시 천도 논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李泰鎮, 1994 「漢陽 천도와 風水說의 패퇴」 『韓國史市民講座』 14 참조

53) 고려말에는 개경 상업의 발전 속에서 상인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高麗史』 권85 刑法2 禁令 恭讓王 2년 4월 ‘籍京市工商, 其寓居隱漏 不付籍者 主客論罪’). 이러한 속에서 개별 시전들의 판매 물품이 역시 기존의 塵案에 규정된 판매 물종에만 그쳤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4) 『三國遺事』 권1 王曆1 太祖
‘庚辰乳岩下立油市 故今俗利市云乳下’

55) 『高麗史』 권53 五行1 五行二日火 元宗 12년 2월 戊申
‘楮市橋邊 民家三百餘戶 火’

56) 『高麗史』 권89 后妃2 曹國長公主
‘忠惠命李儼尹繼宗等 禁馬市不得賣馬’

러한 몇 가지 사례는 기록에 남은 것이며,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문 판매 시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초 이래로 각 시전들은 각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의 이름을 따서 시전의 명칭으로 삼았던 것이다. 판매 물종을 따서 시전 명칭이 붙여진 점은 조선초 만의 특유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⁵⁷⁾

한편 조선초의 시전은 고려시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물종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었으나, 그 판매 물품이 무엇인지를 외부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점은 개경의 시전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앞서 보았거니와(g-1), 조선에 와서도 이 점은 다르지 않았다. 앞서 본 사료 f-3을 다시 제시한다.

‘宗簿直長 崔萬里 등이 말하기를, “지금의 工商은 里巷에 두루 흩어져 서로 이익을 힘써 물가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행랑을 세워 市廛을 삼았으니, 이제부터 某匠·某工으로 나누어 같은 무리끼리 거하게 하고, 京市署로 하여금 그 물가를 고르게 하도록 하며, 위반자는 통렬히 징벌하십시오”라 하였다. 의정부와 六曹에서 의론하기를, “행랑과 諸色 工商의 門에 中國의 例에 따라 立標하도록 하십시오”라 하였다.’ (『世宗實錄』 권7 2년 閏正月 戊戌)

위에서 보듯이 세종 2년에 의정부와 六曹에서는 중국의 例에 따라 ‘行廊及諸色 工商之門’에 ‘立標’할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거니와, 이는 곧 工商들의 시전에서 전문 판매 물종의 외형적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시전의 외형적 모습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록도 참고된다.

- h. 통신사 朴瑞生이 행할 수 있는 事件을 갖추어 아뢰기를, …일본 街市의 제도는 市人이 각기 처마 아래서 판자로 層樓를 설치하고 그 위에 물품을 두어 먼지로 더러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용이하게 보고 살 수 있으며, 市中의 食物을 귀천 구별없이 모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市는 말랐거나 젖은 魚肉 등의 食物을 모두 먼지나는 흙

『牧隱詩藁』 권29 詩 同閏判書權判書 拜掃外舅姑墳墓 入城欲觀石戰 馬市川邊則空無人

57) 종래에는 취급 물종에 따른 시전 명칭의 사례에 대하여 『端宗實錄』의 ‘紙肆’를 최초의 것으로 보고, 고려시기의 시전 명칭은 아직 취급 물품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金東哲, 1985 앞의 논문 28쪽). 또 기사 g-2에 근거하여 고려말에 개경의 시전들이 물종별(업종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홍희유, 1989 앞의 책 71쪽).

위에 두어 혹은 (그 위에) 앉거나 밟거나 합니다. 빌건대 운종가 좌우 행랑으로부터 동쪽으로 樓門에 이르기까지, 鐘樓로부터 남쪽으로 광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충하는 처미를 만들어 그 아래에 층루로서 물품을 두는 곳을 설치하고 某間은 某所라고 나누어 차례로 액자를 걸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世宗實錄』 권46 11년 12월 乙亥)

이는 日本에서의 견문에 바탕하여 通信使 朴瑞生이 올린 건의의 일부로 시전의 내부 시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각 시전들이 층층이 板子로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물품을 두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 더러워지지도 않고 구매자들도 그 물품을 쉽게 구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선의 경우도 기존의 시전 건물에다 물품 비치용 선반을 만들고 칸별로 물품 표시를 한 額子를 달아 어떤 물품인지를 구매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⁵⁸⁾ 이 건의는 후술하듯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전의 외형의 일단을 보여 준다. 즉 시전에서 물품을 비치하는 선반과 같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판매 물품의 세부적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전문 판매 물종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는 해당 물종 내부의 세부적인 물품 종류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2) 物種別 市塵 배치

당시 시전의 존재 형태로서, 판매 물종별 시전들의 지역적 존재 형태를 살펴보려 한다. 물종별 시전 배치는 늦어도 고려말에는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앞서 본 사료 d가 이를 보여준다.

‘사헌부에서 上書하여 時務 8事를 아뢰었다. … 工匠은 가게(肆)에 거하지 않으면 業이 專一 할 수 없는 고로 舊京의 시절에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으로 大市의 점포를 나누었습니다. 牛馬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곡 종류는 각기 사는 곳에서

58) 사료 h에서 朴瑞生이 처미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雲從街 左右行廊에서 樓門까지의 시장 거리가 시전이 아닌 閭巷小市라는 견해가 있으나(홍희유, 1989 앞의 책 137-138쪽), 이 구간은 앞서 보았듯이 시전 행랑이 설치된 구간이다.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천도 이래로 운중가에 雜處하여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장사아치들이 뒤섞이어 틈을 엿보아 서로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京市署로 하여금 한결같이 舊京의 제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太宗實錄』 권19 10년 1월 乙未)

위 사료에 의하면, ‘舊京’에서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이 각기 大市에 점포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牛馬류의 거래시에도 정해진 장소가 있었으나, 한양(서울)으로의 천도 이후에는 상인들이 각각 판매 물종별로 그 거래 장소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雲從街에 모두 밀집하여 올바른 거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舊京, 즉 개경의 예에 따르는 것이니, 이는 곧 판매 물종별로 시전의 공간적 위치를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즉 이 건의가 지향하는 바는 이미 고려 시기 개경의 시전에서 있어 온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를 새 왕경이 된 서울에서 되살리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는 국가가 都城 상업에 대한 파악과 통제를 보다 원활히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겠는데, 이 건의가 있는 다음 달에는 앞서 본 사료 c의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안이 확정되었다.

‘시전을 정하였다. 大市는 長通坊 윗쪽으로 하고 米穀雜物의 경우 東部는 蓮花洞口, 南部는 薰陶坊, 西部는 惠政橋, 北部는 安國坊, 中部는 廣通橋로 하며, 牛馬의 경우 장통방 아래 川邊으로 하였다. 閭巷小市는 각기 사는 곳의 門前에서 열도록 하였다.’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甲辰)

즉 시전 중에서도 ‘대시’라 불리는 것은 長通坊以上에, 米穀雜物을 거래하는 시전은 東部의 경우 蓮花洞口, 南部는 薰陶坊, 西部는 惠政橋, 北部는 安國坊, 中部는 廣通橋 등에, 그리고 牛馬류 시전은 長通坊 아래의 川邊 등 각각 일정한 배치 장소 내지 범위가 계획되었다. 다만 이들 시전과는 다른 일반 도성민들의 자연발생적 유통 기구인 ‘여항소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도성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래 주체의 거주지 어디든지 개설되게 하였다. 위의 배치안에서 외형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米穀類 시전이다. 특별한 지역 배치의 제한이 없던 고려 시기 개경의 경우(사료 d)와는 달리, 雜物류 시전들과 함께 각 부분마다 특정 지

역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종별 시전 배치가 시전 통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는 미곡류 거래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고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됨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대로 이 배치안이 결정된 이듬해인 태종 11년에는 시전 행랑의 조성 건의가 있었고, 태종 1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행랑 役事가 이어졌다. 이렇게 조성된 행랑 중 시전 행랑으로 쓰일 것은 앞에 본 대로 雲從街-樓門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이다. 그런데 이 구간은 정작 태종 10년의 물종별 시전 배치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초의 배치안(사료 c)에서는 남부 훈도방이나 북부 안국방 등이 미곡과 잡물을 취급하는 시전 지역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는 雲從街-樓門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볼 때, 시전 행랑이 건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태종 10년의 시전 배치안은 행랑 건설 후에까지 준거로 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는 행랑 건설 이후에도 오래도록 관철되지 못하였다. 즉 판매 물종별로 시전들을 나누어 배치하는 ‘市肆類分’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i-1. ‘宗簿直長 崔萬里 등이 말하기를, “지금의 工商은 里巷에 두루 흩어져 서로 이익을 힘써 물가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행랑을 세워 市廛을 삼았으니, 이제부터 某匠·某工으로 나누어 같은 무리끼리 거하게 하고, 京市署로 하여금 그 물가를 고르게 하도록 하며, 위반자는 통렬히 징벌하십시오”라 하였다. 의정부와 六曹에서 의론하기를, “행랑과 諸色 工商의 門에 中國의 例에 따라 立標하도록 하십시오”라 하였다.’ (『世宗實錄』 권7 2년 閏正月 戊戌)
2. ‘시헌부에서 禁畵으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아뢰기를, “하나. 市肆는 該曹로 하여금 적절히 헤아려 땅을 나누어 亂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속이는 것을 막도록 하십시오…” (『世祖實錄』 권17 5년 8월 甲寅)

i-1의 崔萬里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이미 시전 행랑을 조성하였음에도 많은 工商들이 각기 里巷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물가가 양등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만리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건설되어 있는 행랑을 工商의

업종별로 나누어居하게 하는 한편, 물가 위반자를 엄히 다스리는 對症의 단속 방침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최만리의 건의를 논의한 의정부와 六曹은 시전 工商들의 판매 물종별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의 例에 따라 '立標' 할 것만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당초 최만리가 건의한 '分某匠某工而類居之' 즉 물종별 시전 배치가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 물종별 시전 배치는 아직 그것이 강제될 만큼 시전 상업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웠다. 이러한 위에서 상거래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 판매 물종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⁵⁹⁾

시전들을 전문 물종에 따라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 50년 후인 세조 5년에 사헌부는 시전이 亂雜함에서 오는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市肆마다의 '分地'를 주장하고 있다(i-2). 물종별 시전 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성종 대에 오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대대적인 市肆 移轉이 단행되기에 이른다.

- j. '經筵에 임어하였는데, 講을 마치자 임금이 대사헌 李愬長에게 이르기를, "前日에 卿들에게 명하여 市肆를 가서 살피게 하였는데, 그것을 이미 보았는가?" 하니, 서장이 대답하기를, "臣이 이미 호조·한성부와 더불어 함께 살피고 모두 本處로 돌려 보냈습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 묻기를, "대저 人情은 모두 옛 것을 편안하게 여기니, 移市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라 하니 領事 鄭昌孫·洪允成이 대답하기를 "市肆가 땅이 좁고 사람이 많아 市人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챙깁니다. 이제 本處로 돌려 보내어 疎密이 적절하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원망하는 것은 그 간교함을 부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樓門으로부터 위로는 경복궁 下馬碑에 이르기까지

59) 물종별 시전 배치 여부가 반드시 상업의 특정한 발전 단계와 상응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唐代까지는 동일 업종의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宋代 이후로는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혼재하였다. 그러다가 대략 明末清初에 이르러서는 다시 동일 업종 점포들이 한 곳에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山根幸夫, 1994 「中國의 中世都市」,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서울시장개발연구원 131쪽, 141쪽). 조선초 당시 중국은 明初이므로 여러 업종의 시전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明初의 중국에서 시전 점포에 立標를 한다는 것은 한 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업종의 시전들을 상호 구분하고 이를 정부가 파악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을 것이다.

市肆를 나누어 배열하면(分列市肆) 물건 파는 자가 편안함을 얻고 民心이 스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호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市肆를 살펴 定하여 民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成宗實錄』 권45 5년 7월 壬午)

기사 j에 따르면, 성종 5년 7월 이전의 어느 시점에 移市 조치가 일단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移市의 이유는 시전에 사람들이 너무 밀집하여 상인들이 ‘罔利’를 일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移市당한 상당수 상인들이 移市 이전의 지역으로 돌아가 있으므로 이들을 移市 때에 옮겨진 새 장소(本處)로 되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成宗은 원래의 장소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人之常情이라면서 移市를 보류함이 어떠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대사헌은 상인들의 민원은 단지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樓門에서 경복궁 下馬碑까지의 구간에 시전을 나누어 배열해야(分列市肆) 한다고 하였다.⁶⁰⁾ 이는 이들이 단행한 移市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주장한 것이라 하겠으나, 성종은 이에 대해 民怨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여전히 신중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성종 3년에는 日影臺에서 蓮池洞口까지 새로 시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비해 서울의 市街가 협소한 까닭에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다치며 상거래 상의 欺誕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 건국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의 시전 상업이 그만큼 자리를 잡아감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이 과정에는 일부 시전의 이동이 있었을 것이다. 기사 e-2에서 ‘本處’라고 한 것이 성종 3년의 시전 확대 시에 각 시전 별로 새로 정해진 곳을 지칭하는지, 혹은 시전 확대 이후 성종 5년 7월 이전의 어느 시기에 移市 조치가 있었을 때 정비된 시전별 위치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성종 5년에 와서 종묘앞 樓門에서 경복궁 下馬碑에 이르는 구간, 즉 樓門-雲從街 구간에 대한 ‘分列市肆’가 일차 추진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당국의 조치를 보고 받은 성종은 아직은 물종별 배치보다는 기존의

60) 이 구간은 앞에 본 대로 시전 행랑이 이미 건설된 구간이다. 따라서 ‘分列市肆’란, 단지 시전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배열한다는 뜻이다.

존재 형태를 존중하는 것이 어떠한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移市 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종 16년에 와서였다. 이 해에 移市가 다시 논의되자, 鐵物前과 絲紬前 상인들을 필두로 한 많은 시전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收監된 상인들이 15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⁶¹⁾ 이러한 반발의 강도는 역으로 그 移市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移市 단행 이후에까지도 상인들이 담당 관리들을 비방하고 訟事를 그치지 않아서 당초 移市를 실행하였던 호조판서가 移市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건의하기까지 하였지만,⁶²⁾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로써 볼 때 성종 16년은 조선 시기 서울 시전 상업의 물종별 배치라는 면에서 하나의 획기였다고 하겠다.

태종 대 행랑 건설 무렵부터 제기되었던 물종별 시전 배치가 실제 移市 조치로 나타난 것은 행랑 건설 후 거의 70년이 지나서였다. 정부로서는 개경과 달리 시전 상업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던 서울 상업에 대해 성급하게 무리한 移市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으로 이를 조장해가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세종 때 최만리가 물종별 배치를 건의하자 이에 대해 의정부 등이 판매 물종 표시만을 건의하였던 것도 서울 상업의 현실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서울 상업의 발전 속에서 이러한 일반 신료들의 판단은 점차 변화되어 갔으나, 성종 3년 시전 확대 조치 이후에도 국왕은 시전 활동의 안정을 중시하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많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대적인 移市를 실제로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성종 16년 경에 가서였다. 새 왕경으로서의 서울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물종별 시전 배치를 위한 정부의 강제적 조치는 이제 서울의 시전 상업이 그 형성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리를 잡고 나아가 상당한 발전을 성취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61) 『成宗實錄』 권181 16년 7월 乙丑, 庚午

62) 『成宗實錄』 권191 17년 5월 辛亥

‘戶曹判書李德良 啓曰 頃者 移易市肆 欲以便民也 然民情不同 其所不願者 訟之不已 請仍舊…上曰 頃者 列肆不均 居貨者多怨 故從民願而移之 今又紛更 則後必有願移者 然則何時而定也 史臣曰 德良以劉莫知等極口詆毀 怨讟叢己 啓請仍舊 人皆短之’

3) 市廛의 同業組織化와 買集權의 형성

市廛은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어용적 성격의 유통 기구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閭巷小市'나 행랑의 이면 구역에 존재한 상업 점포들과 같은 유통 기구와는 달랐다. 그러나 이들도 민간의 물품 수요를 위한 私的 交역에 종사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시전 상인들 중에 富商大賈가 있었던 점은 이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시전이 가지는 私的 유통 기구로서의 기능은 '여항소시'나 기타 非시전 계열의 상업과 더불어 전반적인 유통 경제의 발전 속에서 확대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전에 대한 감독과 통제, 非 시전 계열 상인의 성장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전들은 그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직화가 요구되었다.

- k. '漢城府에서 五部坊里禁盜節目을 아뢰기를, "...무릇 도적이 훔친 것은 자취를 없애고자 하여 싼 값으로 市肆에 팝니다. 지금부터 鑰銅鐵器 및 匹段·綿紬·衣服을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는 市肆坐主가 곧바로 刑曹에 알리도록 하며, 坐主로서 그 일을 발각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주도록 하십시오'라 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壬寅)

이 기사의 내용은 한성부에서 올린 도적 방지 대책의 일부로서, 절도범들이 贓物을 낮은 가격으로 市肆에 판매하는 일이 많으므로 市肆坐主로 하여금 鑰銅 제품이나 匹段 綿紬 등의 암거래 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붙잡아 刑曹에 고하도록 하고 이를 발견치 못하는 坐主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市肆坐主는 그 이름으로 볼 때 市肆 상인들의 대표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市肆坐主가 암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책임지워졌다면 그는 전체 모든 시전 상인을 대표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정 물종을 취급하는 동일 업종 시전들을 대표하는 상인이었을 것이다. 최소한 판매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취급하는 업종의 상인이어야 해당 물품의 암거래 행위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미 鑰銅 제품이나 鐵 제품, 匹段류, 綿紬 등과 같은 개별 물종들에 따라 그것을 취급하는 시전 상인들이 각기 그 대표자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즉 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성종 16년에는 시전 移轉에 대해 鐵物塵과 絲紬塵 등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투서를 통하여 당국자를 모욕하고 訟事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市肆 移轉 이후에도 당국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를 왕에게 건의하게끔 압박을 가하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내부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무렵에 오면 물종별로 상인들 내부의 조직적 결속이 실재하였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성종 3년의 기록에 보이는 市肆坐主는 그러한 동업 조직의 존재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⁶³⁾

시전 상업은 이처럼 성종 대에 와서 그 내부적인 조직화를 보이는 한편으로, 非 시전 상업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특권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서울 都城내로의 物貨의 買集과 관련된 것이었다.

1-1. 韓明會 등이 아뢰기를, “...또 간교한 무리가 市塵에 근거하여, 한 村民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거짓으로 속여 그 자리에서 빼앗으며 심한 경우는 國門 밖에서 손을 잡아 끌면서 그 집으로 데려가 (물건을) 모두 산 후어야 (그 촌민을) 보내주니 村民으로서 무역하러 오는 자는 대개 반값만을 얻어 돌아갑니다...” (『世祖實錄』 권4 2년 5월 甲戌)

63) 조선시대 시전 상업의 동업조직과 관련하여서는 그 형성 시기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태조 3년 2월(기사 g-1)의 조치를 계기로 ‘一物一塵’ 형태의 시전이 형성되고 동업조직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金東哲, 앞의 논문 26-27쪽), 다른 하나는 16세기의 상품 유통 경제의 발전 속에서 시전 상인의 동업 조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일물일진’의 등장이 동업 조직의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또 ‘일물일진’ 형태의 시전은 전술한 대로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한편 후자에서는, 中宗 36년에 細木綿을 매입한 시전의 ‘塵主’와 ‘有司’가 자신들에게 細木綿을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그 판 사람을 고소하자, 거꾸로 ‘좌주’ 등이 고소되어 처벌을 받은 데에 대해 시전 상인들이 당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례가(『中宗實錄』 권96 36년 11월 庚寅)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 때 몰려가 행패한 상인들은 ‘塵主’가 직임을 맡고 있는 동업조직의 조합원이라는 것이다(백승철, 1994 『16세기 부상대고의 성장과 상업활동』, 『역사와 현실』 13, 254-255쪽).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塵主’는 위 본문에 지적한 성종 대 ‘市肆坐主’와 다른 존재가 아닐 것이다. 또 성종 대 시전 상인들이 移市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속력은 예의 세목면 사례에 비해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전 상인의 동업조직화는 늦어도 성종 때로 소급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기사는 세조 때에 도성 내 유입 물화를 둘러싼 상인들의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村民들이 도성 내로 물화를 가지고 들어와 판매하려 할 때, 간교한 시전 상인들이 이들을 城門 밖에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하여 그가 가져온 물화를 대부분 반값에 모두 買集한 뒤에야 놓아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시전 상인들이 도성 외에서 들어오는 물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아직 이 무렵까지는 시전 상인이라 하여 유입 물화의 買集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은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사례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15세기 말에 가면 아래 기사 1-2에서 보듯이 변화하고 있다.

1-2.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또 平市署에서 禁亂吏를 나누어 보내어 많이 捕告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綿布를 지니고 紬肆를 지나는 자가 있으면 또한 犯禁이라 하여 捕告하고, 署員 또한 일체 刑杖으로써 겁주고 위협하니, 그 사람은 笞罰에 겁을 먹고 모두 贖錢 바치기를 청하매 면포 두 세 필을 바친 후에야 풀려나니, 지극히 원통하고 억울한 노릇입니다. 지금 이후로 犯禁하는 자는 該司로 하여금 사실을 따져서 죄를 주도록 하십시오...’ (『燕山君日記』 권37 6년 3월 乙卯)

기사 1-2는 平市署에 分遣된 禁亂吏들이 상금을 위해 犯禁者들을 많이 捕告하는 것을 능사로 여긴 나머지 무리한 단속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금난리들은 紬肆의 취급 물종이 아닌 綿布를 가지고 紬肆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犯禁 행위자로 捕告하고 平市署 관원 또한 刑杖으로 위협을 가하니, 붙잡힌 자가 이에 겁을 먹고 收贖을 자청하여 가지고 있던 綿布를 바친 후에야 풀려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금난리들이 면포를 가지고 紬肆 앞을 지나간 사람을 ‘범금’이라는 명분으로 붙잡아 가고 있는 점이다. 당시 면포가 綿紬를 취급하는 紬肆의 전문 물종이 아님에도 면포를 가지고 紬肆를 지나쳐 가던 사람을 단속한 것은 실로 억울한 처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紬肆에게 특정 물품의 買集 권리가 있고, 그 물품을 판매할 때 이를 紬肆에 판매하지 않는 것은 ‘범금’이라 하여 위법 행위로 단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전의 買集權은 언제 성립되었을까? 위 기사의 내용이 1500

년의 일임을 생각할 때, 기사 1-1의 세조 대 이후 15세기 말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조선초 시전 상업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성종 대 무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종 대에는 앞에 보았듯이 기존의 시전 구역에 더하여 일영대에서 연지동구까지의 구간에도 새로 시전이 설치되어 시전 구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판매 물종별 시전 배치가 처음으로 강력히 추진된 것도 성종 대였다. 태종 대 시전 행랑 건설 이후 정부로부터 다소의 혼잡 양상을 묵인받으며 육성과 보호 속에 조성되어 온 서울 시전 상업은 이제 성종 대 무렵에 오면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는 한편으로, 그러한 시장 역량은 국가로 하여금 그동안 원칙으로만 내세워진 채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물종별 시전 배치를 강제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시전 확대가 이루어진 그 해의 기록에 보이는 '市肆坐主' 중심의 상인들의 동업 조직화 양상도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연산군 6년(1500년) 현재 禁亂吏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시전의 買集 특권도 성종 무렵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즉 시전의 확대와 시전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배치, 시전의 동업 조직화 등 시전 상업의 발전과 그에 대응한 국가의 대책 등에서 일련의 변화상이 확인되는 성종 무렵에 非 시전상업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전의 買集 특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성종 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종 대를 전후한 15세기 말 시전 상업의 일련의 변화 과정의 산물임은 틀림없다.

5. 15세기 市廛 정책의 基調와 市廛 감독 체제

1) 市廛 정책의 基調

농업을 本業으로 여기고 상업을 末業으로 간주하는 것은 농업 경제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에서 항상적으로 강조되는 이념이었다. 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에 대한 인식이 탄력적이었던 고려시기도⁶⁴⁾ 이러한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1세기 초 穆宗 때에는 成宗 때에 실시한

64) 田壽炳, 1986 『高麗時代의 商業政策』 『東洋文化研究』 1 大田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56-쪽
홍희유, 1989 앞의 책 151쪽

鐵錢 유통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자 왕이 양보하여 철전 유통을 제한하면서 ‘務本’을 말하고 있고,⁶⁵⁾ 뒤이은 顯宗은 많은 농민들이 ‘本’業인 농사를 버리고 ‘末’業에 종사하는 것을 ‘浮靡’한 데에 익숙해진 현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말업 종사자들을 다시 농업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⁶⁶⁾

그러나 시전 상업은 왕실이나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고, 재정 잔여물을 불하받아 판매하는 어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서울 도성 주민들을 위한 유통 기구로서도 기능하였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모두 중요한 것이어서 시전 상업은 고려나 조선을 막론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抑末’ 정책 하에서도 국가 통제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했다. 시전은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중심지이며 지배체제의 주요 人員들이 거주하는 王京의 유통 기구인 만큼 그 시전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처벌되고 방지되어야 했으며, 국가는 그것의 일정 수준으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아무리 官의 이름으로 물품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물건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으며, 그러하지 않는 관원이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 m-1. ‘韓康이 이어 조목별로 아뢰기를, …工商은 利用厚生하는 所以인데, 지금 諸司에서 쓸 것을 모두 市에서 취하되, 혹은 그 값을 낮추기도 하고 혹은 끝내 그 값을 지급하지 않아서 工商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니,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이를 금하게 하십시오’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22년 2월)
2. ‘判濟用監事 李云老를 金化에 귀양보냈다. …云老 등은 吏卒을 시켜 市物을 收掠하여 國用에 보태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듣고 노하여 云老 등을 하옥시키고, 사헌부 持平 洪汝方을 불러 꾸짖기를 “백성의 물건을 收掠함은 法에서 마땅히 금하는 바인데, 지금 官吏가 대낮에 공공연히 겁탈하는데도 어찌 죄를 칭하지 않는가?”…’ (『太宗實錄』 권20 10년 12월 丙申)

65) 『高麗史』 권79 食貨2 貨幣 穆宗 5년 7월

‘教曰…便存務本之心 用斷使錢之路 其茶酒食味等 諸店交易 依前使錢外 百姓等私商交易 任用土宜’

66) 『高麗史』 권79 食貨2 農桑 顯宗 3년 3월

‘教曰 洪範八政 以食爲先 此誠富國強兵之道也 比者人習浮靡 棄本逐末 不知稼穡 其諸道錦綺雜織甲坊匠手 並令抽減 以就農業’

기사 m-1은 고려 충렬왕 때 諸司가 시전에서 물건을 취하면서 값을 낮추어 지불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니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각 관청이 시전을 함부로 침탈하지 말도록 하고 물건을 취할 시에 반드시 그 값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것은 忠宣王의 즉위와 복위의 下敎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⁶⁷⁾ 조선초에도 이러한 입장은 당연히 견지되었다. m-2는 濟用監에서 國用에 보태기 위하여 시전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태종이 매우 분노하여 제용감 판사를 하옥시켰다는 것이다. 당초 제용감에서는 억매한 시전의 물건으로 국용에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억매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헌부에서 請罪해야 할 불법 행위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에 楮貨 유통책에 골몰하던 태종이 저화에 대한 시전 상인들의 반감을 의식해야 했던 상황임을 감안 해야겠으나 시전 상업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儒敎에서는 市廛 설치가 상업 인구의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조선초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⁶⁸⁾ 그러나 시전 상업은 그 기능으로 하여, 상업을 末業視하는 속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조장되고 보호받았던 것이다. 조선 정부가 그 상업적 전통이 개경에 비해 크게 미흡한 서울(漢陽)에 시전 상업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전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이나 간섭을 배제하려 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앞의 기사 h에서 보았듯이 朴瑞生은 일본처럼 시전 건물에다 물품 비치용 선반을 만들고 칸별로 물품 표시를 한 額子를 달아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왕이 이를 의정부와 諸曹로 하여금 논의케 한 결과, 결론은 ‘不可’하다는 것이었다. 박서생의 건의가 ‘불가’로 결론이 난 이유는 다른 데서 찾기 어렵다. 시전 내부의 선반 설치와 세부 물종 표시 같은 것이 국가의 시전 파악이나 통제에 반드시 긴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전 상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꼭 긴요하지 않은 간섭이나 통제는 피해야 했던 것이다.

67) 『高麗史』 권84 刑法1 職制 忠烈王 24년 1월 : 同 34년 11월

68) 『太宗實錄』 권20 10년 10월 壬戌

‘司諫院左司諫大夫柳伯淳等上疏 疏略曰…一 傳曰治本於農 又曰逐末者多則廛以抑之…商賈之人則以賤易貴 其利倍矣 以勞役佚 其樂多矣 故農夫日寡 商賈日衆…願自今 凡爲商賈者 內則漢城府 外則州縣 各於所居 置籍載名…’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물종별 시전 배치의 진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앞의 기사 i-2에서 보았듯이 세종 때 최만리는 행량을 工商 업종별로 나누어 거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와 六曹는 행량을 나누어 거하게 하지는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중국처럼 '立標'할 것만을 왕에게 건의하고 있다. 물종별 시전 배치가 당장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전 상업이 일정 수준으로 자리 잡는 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조선 초의 정부가 서울의 시전 상업을 단순히 '抑末' 정책의 한 대상으로서 억압하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님은 한 때나마 상인들에 대한 商稅 규정이 상인들의 도망에 따라 폐지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즉 태종 10년 11월 市廛 상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상인들에 대한 商稅 규정이 건의되었는데,⁶⁹⁾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 법제화되었다가 상인들이 모두 도망하므로 몇 달 못 가 폐지되고 있다.⁷⁰⁾ 이처럼 상인들의 도망에 즈음하여 상세를 쉽게 폐지한 데에는, 시전 상업이 체자리도 잡기 전에 商稅를 무리하게 수취하기보다 시전 상업의 일정한 조장이 우선이라는 기본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工匠과 商人에 대한 收稅는 이후에도 다시 이루어져 몇 차례의 변화를 겪으며 『經國大典』에서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또 상인들에 대한 상세 수취가 상업의 지나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여러 방책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⁷¹⁾ 그러나 시전 상업에 대한 상세 수취의 경우, 그것은 명목 화폐인 楮貨를 유통시키려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목적이었으며,⁷²⁾ 단순히 시전 상업에 대한 정부의 억압적인 입장에서만 이해될 것은 아니었다.

2) 市廛 감독 체제

'抑末'의 원칙 속에서도 시전 상업은 일정 수준으로 조장되고 유지될 필요가

69) 『太宗實錄』 권20 10년 11월 甲子

70) 『太宗實錄』 권21 11년 1월 癸酉

‘先是 令漢城府 凡大小工匠商賈 記名成籍 每至月季 徵稅楮貨 各一張 以爲恒規 閭里巷市 皆輟業逃遁 窮困已甚 至是乃倖此法’

71) 홍희유, 1989 앞의 책 152-153쪽

72) 田壽炳, 1986 앞의 논문 62쪽

元裕漢, 1994 「화폐의 유통」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74쪽

있었다. 정부가 官에 의한 불법적인 침탈을 금지하고, 긴요하지 않은 부담과 통제를 가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전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적 기초를 지녔다 하여 시전의 상업 행위를 방임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시전 상인들도 당연히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상거래 행위를 올바르게 감독함으로써 왕경에서의公私의 교역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시전 상업을 관할·감독하기 위하여 고려 이래의 시전 관할 관서인 京市署를 활용하였다. 경시서는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1년 7월에, 종5품의 丞을 최고 책임자로 하여, ‘市價를 고르게 하고(平均市價), ‘奸僞’를 금지하고 다스리며(禁理奸僞), ‘稅課’를 감독하는(監督稅課) 등의 일을 맡도록 규정되었다.⁷³⁾ 후에 平市署로 개칭되어 市塵을 團束하고(勾檢市塵), 도량형을 공평히 하며(平斗斛丈尺), 物價의 騰落을 조절하는(低昂物貨)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규정되고 있다.⁷⁴⁾ 요컨대 경시서(평시서)는 시전 물가의 통제·조절과 불법 상거래의 단속 등을 그 주요 업무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시서의 업무와 기능은 고려시대 경시서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고려 때에 경시서의 공식 직능은 ‘勾檢市塵, 즉 ‘市塵에 대한 단속’ 정도만 규정되어 있으나,⁷⁵⁾ 그 구체적인 업무 사례들을 보면, 京市의 物價 감시와 가격의 公定, 일상 생활과 관계가 깊은 미곡 매매의 감독과 가격의 公定, 常平倉용 미곡의 매매 등 시전 상업에 대한 監察 활동 일반에 관여하였던 것이다.⁷⁶⁾ 조선시대 경시서(평시서)는 시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監察 관서로서, 이와 같은 고려시대 경시서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경시서의 책임자인 京市署丞은 고려 시대를 통하여 정7품에 머물러 있었으나, 조선 태조 元年에는 앞에 말했듯이 종5품의 관직으로 규정되고 있다. 물론 세조 8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5품 衙門에서 7품 이문으로 되었다가 이

73) 『太祖實錄』 권1 元年 7월 丁未

‘京市署掌平均市價 禁理奸僞 監督稅課等事 令一從五品 丞二從六品 注簿二從八品’

74) 『經國大典』 吏典 平市署

75) 『高麗史』 권77 百官2 京市署

76) 北村秀仁, 1990 앞의 논문 275-276쪽

해 3월에 그 직능의 중요성에 비해 관서의 격이 너무 낮다 하여 태조대처럼 5품 직인 슈이 복구되고 있지만,⁷⁷⁾ 조선초에 와서 경시서의 직급이 기본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사실상 동일한 직능을 가진 관청의 직급이 이처럼 7품관에서 5품관으로 상향 설정된 것은, 그만큼 해당 관청의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경시서가 갖는 시전 감독의 직능이 고려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시전 감독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은 조선초에 와서 '抑末'論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려말의 전반적인 상업 발전이⁷⁸⁾ 경시서 직제 변화에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시전 상업의 관리 감독 업무는 경시서 외에 사헌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태종 10년 2월에는 시전의 물종별 排置案이 마련되는 동시에(기사 c) 京市에 대한 사헌부의 監察 기능이 복구되었다.⁷⁹⁾ 경시서보다 직급이 높은 사헌부에서 시전의 상거래 질서를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시전 감독 체제 역시 고려 때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즉 고려 때에도 경시서 외에 御臺臺가⁸⁰⁾ 있어서 경시서의 직능을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監察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⁸¹⁾ 그러한 京市 監察 기능은 한동안 정지되어 있다가 전술한 대로 조선 태종 10년에 회복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때 회복된 것은 직접적인 감찰 기능은 아니었고 고려 때처럼 상위 관서로서 경시서에 대한 감독에 머물렀다. 즉 이 때에 회복된 것은 淸齋監과 京市監에 대한 감찰인바 경시감은 청재감과 같은 관

77) 이 때 한성부 관관으로 하여금 경시서령을 겸임하게 하여 每 衙日에 경시서에 출근토록 규정하였다 (『世祖實錄』 권28 8년 3월 丙辰).

78) 고려말 상업의 전반적인 발전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김동철, 1985 앞의 논문

安秉佑, 1994 〈고려시대의 수공업과 상업〉 《한국사》 (6) 한길사

다음 기사는 고려말 개경의 상업 발달로 인한 시전의 공간적 확산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各廳記事』 卷地 康熙 35年 9月 日 刑曹 '松都末年 市出門外'

79)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甲辰

『司憲府上言』…至於市廛 奸盜縱橫 務相欺誑 物價騰湧 職此之由 幣豈小哉 是故 自昔所傳本府分臺記有曰 淸齋監京市監察 此前朝盛時之良法也…又於京市 亦遣日差監察 罷市爲限 考其物價 禁其奸濫 則市廛整齊而物價均平矣 判曰依申 其京市監察 依前例施行

80) 어사대는 고려 후기에 監察司, 司憲府 등으로 개칭되었는데, 時政의 論執, 風俗의 匡正, 百官非違의 糾察 彈劾 등을 담당하였다(『高麗史』 권77 百官1 司憲府).

81) 北村秀仁, 1990 앞의 논문 276-277쪽, 298쪽

부名이고 그것은 곧 경시서를 가리킴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세종 18년에는 시전 상인들이 下三道의 흉년으로 물건을 가져와 미곡으로 바꾸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도량형을 속이거나 미곡에다 모래를 섞는 등의 불법 행위로 이득을 올리는 데도 경시서의 인원이 절대 부족하여 두루 단속할 수 없으므로, 사헌부에서 직접 나서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행하고 아울러 경시서의 근무 태도도 糾察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臣僚들의 절대적인 의견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작 미곡을 사려는 鄉曲 백성들이 피해를 볼 뿐이므로 사헌부에서는 다만 '大綱'의 '糾察'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⁸²⁾ 아직 사헌부가 경시서처럼 직접 상거래 단속의 일선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실 고려 때에도 어사대(사헌부)가 京市署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졌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상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없었다. 조선초에 사헌부의 시전 監察 기능이 회복된 뒤에도 이처럼 일선 업무에 나서고 있지 않았던 것은, 고려시기 어사대의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헌부의 직접적인 시전 감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종 27년 11월에도 '市塵工商'들이 미곡에다 모래를 섞거나 木皮 따위를 몰래 넣어 만든 가죽신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실로 많으므로 사헌부에서 市塵 監察을 위한 分臺를 京市署 가까이 설치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糾理케 하고 위반자는 엄히 처벌토록 하였으나,⁸³⁾ 分臺의 使令들이 그 단속권에 가탁하여 백성들의 자유로운 賣買를 못하게 하는 등 作弊를 일삼으므로 사헌부의 京市 分臺는 설치된 지 5개월만에 폐지되고 다시 이전처럼 京市署에서 규찰케 하고 있는 것이다.⁸⁴⁾

사헌부의 市塵 감찰 기능이 불법 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의 형태로 나타

82) 『世宗實錄』 권75 18년 11월 丙辰

「議于政府曰 今因京城以南下三道凶歉 爭持家產牛馬 到市換米…緣此 市井姦狡之徒 或用不准升斗 或矯平准之器 或雜以穀 或雜以沙 多方欺罔…愚民苟救目前之急 不暇告訴 益就困窮 誠可憐憫 而京市署雖職掌市令 官卑人少 不能徧察 安得懲姦而理冤乎 自今憲府嚴加摘發 痛繩以法 兼糾京市署動慢何如 僉曰 如此立禁則 鄉曲愚民 未易換穀 得食難矣 莫若憲司舉其大綱糾察而已 從之」

83) 『世宗實錄』 권110 27년 11월 乙酉

84) 『世宗實錄』 권112 28년 4월 丙寅

「傳旨司憲府 前年農事不實 民甚艱食 而監察分臺京市署 檢察市塵 爲使令者 假威作弊 使艱食之民 不得任意買賣 未便 姑令京市署 依前例糾察 勿遣分臺」

나게 된 것은 대체로 성종 대 무렵에 와서였다. 성종 3년 1월에 戶曹에서는 ‘奸僞’의 단속이 평시서의 직무임에도 ‘근래에 왕명에 의해’ 사헌부 외에는 ‘禁亂’치 못하게 한 바 조악한 물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시전 상인들의 불법 행위가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평시서가 이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고 하면서 평시서로 하여금 과거처럼 禁察토록 하라고 건의하고 있다.⁸⁵⁾ 여기서 사헌부만이 ‘禁亂’의 권한을 지니도록 한 ‘근래’라는 시점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왕명〔傳教〕에 의해’라 한 점에서 보면 성종 즉위년에서 同 3년 1월 사이인 것이 분명하다. 후에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헌부 吏屬들이 시전 상인들과 결탁하고⁸⁶⁾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의금부에서 다스리는 데서 오는 사헌부 ‘체통’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시전 업무가 일체 漢城府에 위임되기에 이르렀지만⁸⁷⁾ 불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사헌부의 일선 ‘禁亂’⁸⁸⁾ 활동이 성종 대에 와서 적어도 15년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성종 대에는 시전 구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시전의 물종별 배치가 강력히 추진되는가 하면 시전들이 ‘市肆坐主’를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유입 물화 買集에서의 독점적 권리까지 얻고 있었다. 성종 대에 시전 상업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보이는 것은 시전 행랑이 건설된 지 70여년이 지나면서 시전 상업이 자리를 잡고 내적으로 발전해가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지거니와, 그 동안 고려 시기를 이어 소극적인 시전 감독 기관으로만 머물던 사헌부에서 직접 시전의 불법 상거래 단속에까지 나선 것은, 그 동안 조장과 보호 쪽의 基調를 견지하던

85)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癸卯

‘戶曹啓 平市署掌平物價禁奸僞 而頃因傳教 非司憲府不得禁亂 故市井豪富者 以粗惡之物 眩鬻取直 欺詐日曾 官以平市爲名 而坐視不禁可乎 其不遵市直 行詐買賣者 請依舊禁察 從之’

86) 『成宗實錄』 권101 10년 2월 戊申, 己酉 ; 같은 책 권181 16년 6월 乙巳

87) 『成宗實錄』 권200 18년 12월 辛巳

‘(領事 洪)應啓曰…且風憲之任 上繩君愆 下察百僚 今市塵細碎之事 竝皆禁制 而臺吏之不法者 又令義禁府糾之 其於體統何如 請自今市塵之事 一委漢城府 上曰可’

이전에도 한성부에서 시전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 상거래를 단속하였다(『端宗實錄』 권10 元年 2월 庚寅). 한성부는 이 밖에 商稅 수취의 기능도 담당하였고(『太宗實錄』 권20 10년 11월 甲子), 후에 『경국대전』에는 ‘掌京都口帳市塵…’라고 규정하고 있다.(『經國大典』 吏典 漢城府).

88) 여기서 ‘禁亂’이라 한 것은 후에 ‘亂塵’ 불린 非 시전 계통의 상업 행위를 금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조악한 물품을 비싸게 판매한다거나 도량형을 속인다거나 하는 따위의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한다는 의미였다.

정부의 시전 정책이 시전의 물종별 배치 추진과 더불어 시전 상업 발전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통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술한 대로 사헌부 금난吏의 불법을 의금부에서 다스리는 것과 관련하여 사헌부의 '체통'이 문제되면서 '市廛之事' 일체가 한성부에 위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사헌부의 일선 '금난'활동을 가져왔던 도성 상업의 발전과도 관련하여 주목된다. 즉 이 무렵의 도성 상업의 발전을 도시 상업의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파악·통제하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시전의 물종별 배치를 위한 대대적인 '移市'가 있는 지 2년만에 시전 업무가 이처럼 당대 최고의 도시를 직접 관할하는 한성부에 일임된 것이 그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6. 맺음말

새 왕조의 도움으로 확정된 서울은 개경과 같은 수준의 상업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으므로 도시 상업이 사실상 새로 조성되어야 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 상업의 오랜 전통을 가진 개경의 상인들을 서울로 옮기려 하였으나 개경 상인들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都城의 상업은 시전 행랑이 조성되면서 틀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는데, 서울 도성 내 행랑 조성은 이미 태종 재위 기간 중에 1,360칸을 훨씬 넘는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雲從街-樓門 구간과 鐘樓-廣通橋 구간, 즉 오늘날의 종로 1가-종묘 앞 구간과, 종각-廣橋 구간이 시전용으로 사용되었다. 성종 3년에는 日影臺-蓮池洞石橋 구간의 행랑이 시전용으로 확대 사용되었다.

서울 都城의 유통기구는 시전과 非 시전 계열의 것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시전은 다시 '大市'와 일반 시전으로 구분되었다. '대시'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왕실이나 관청의 수요품, 관리를 비롯한 지배층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물품 등을 주로 거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非시전 계열의 유통기구로서 '여항소시'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의 편리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소로 제한되지 않고 각기 거래 주체의 거주지에서 개설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들의 영업 규모는 상당히 영세하여 商稅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정

도였다. 非 시전 계열의 유통기구로는 시전 행랑 가까이 있는 점포들도 있었다. 당시 商稅 부과 대상인 ‘坐賈’는 이들과 시전 상인들을 포괄한 범주라 여겨진다.

시전 중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대개 工匠이 스스로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과 상업의 겸업 형태였다. 시전 상인들은 ‘富商大賈’로 불리는 대상인을 비롯하여 경영 규모에 따라 商稅 부과가 차등있게 이루어졌다.

조선초의 시전은 고려시기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전문 판매 물종을 따서 그 이름이 붙여지는 ‘一物一廡’형태였다. 판매 물종의 외부 표시는 건국초부터 강조되었으나, 시전 상업의 조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강제되지 않았다.

시전은 늦어도 고려말에는 이미 물종별 배치의 양상을 보였다. 새로 조성된 서울 시전 상업에서도 이를 지향하였다. 태종 대에 처음 계획된 시전 배치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米穀類 시전인데, 고려 시기 개경에서와 달리 그 지역이 제한되었다. 미곡류 거래에 대한 국가의 파악 의지가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물종별 시전 배치는 시전 행랑이 건설되기 전부터 계획되고, 행랑 건설 후에도 원칙으로서 계속 강조되었지만, 오래도록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정부로서는 서울 시전 상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무리하게 물종별 배치를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종별 시전 배치가 실행에 옮겨진 것은 성종 대에 와서였다. 특히 성종 16년에는 상인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移市가 행해졌다. 행랑 건설 이후 70년이 흐르면서 시전 상업이 성장해 간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시전은 이미 성종 초년에는 市肆坐主를 중심으로 한 동업조직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행랑 건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 상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제와 非 시전 계열 상인들의 성장 등에 대응하고 그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종 16년 정부의 대대적인 移市 조치에 상인들이 거세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동업조직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시전은 내부적으로 동업조직화의 양상을 띠는 한편, 대체로 성종 대에 오면 서울 都城내 유입 物貨에 대한 買集權을 갖게 된다. 시전의 물화 매집권 획득은, 시전의 확대와 강제적인 시전 배치의 추진, 시전의 동업조직화와 더불어, 시전

행량이 조성된 후 70년 동안의 서울 상업의 발전과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상업을 末業視하는 속에서도, 서울에 시전 상업을 조장하고 일정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전에 대한 긴요하지 않은 간섭을 자제하고 관청에 의한 침탈을 금하였다. 시전 내부의 선반 설치나 세부 물종 표시와 같은 소소한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시전 파악과 상거래 질서를 위한 물종별 시전 배치도 성종 대 이전에는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시전 상업을 방임한 것은 아니었다. 국초부터 정부는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련 관청에 의한 감독 체제를 구축하였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심적인 감독 관청으로는 고려시대의 京市署가 그대로 활용되었다. 다만 경시서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고려말의 전반적인 상업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위 직급의 사헌부도 경시서와 함께 불법 상거래를 단속하였는데, 시전 상업 초기에는 고려의 어사대처럼 소극적인 감독 기능에 머물렀다. 사헌부의 市廛 감찰 기능이 불법 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형태로 나타난 것은 대체로 성종 대 무렵에 와서였다. 시전 감독과 관련한 사헌부 기능의 이와 같은 변화는 고려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으로서, 시전의 물종별 배치와 함께 시전 상업 발전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인 통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사헌부 금난吏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사헌부 '체통'이 거론되면서 시전 업무가 한성부에 일임된 것도 도성 상업의 발전을 도시 상업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파악·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서울 도성 상업의 실상과 그것이 차지하는 상업사적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전의 물리적 규모와 시설, 그 人的 구성의 형태, '부상대교'와 시전 상인과의 관계, 거래 구조 상에서의 시전 상인과 非 시전 상인의 관계, 시전 상인의 出自와 권력층과의 관계, 시전 상인과 전국 단위의 船商과의 관계, 실제 물품의 유통 경로와 그에 상응한 상인 유형, 고려시기 도성 상업의 구조 등 밝혀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한다.